

일반·전문 상호 실적 전환 인정 방안 윤곽 드러나

- 「건설법」하위법령개정(안) 입법예고, 하도급거래투명화방안등도가닥-



지난9월5일건설업종간교차진출시상
호 실적 인정 방안, 하도급 거래 투명화 및
건설 근로자 보호책, 부실·부조리 건설사
제재 방안 등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
법」 하위 법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
개정안은9월중 의견수렴을거친후규제
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등의 절차를 거
쳐연말이전최종확정돼내년부터시행될
예정이다. 본고에서는 일반·전문 간 교차
진출때적용될상호실적전환인정방안을
중심으로 이번 「건설법」 하위법령 개정안
에포함된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생각해보고자한다.

일반, 직접시공실적제한없이전환가능

먼저, 일반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 진출
때과거 직접 시공한일반공사실적을얼마
든지 전문 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즉, 기존의일반공사실적이아닌전문업종
문업종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한 실
적에 대해서는 해당 겸업 전문업종 실적으
로얼마든지전환할수있게됐다. 다만, 전
환 가능한 직접 시공 실적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3년간쌓은기성실적중대한

건설협회에적법하게신고되어있는실적에
한한다. 이는 2008년도 이후 축적된 공사
실적은 겸업 제한 폐지 이후 조정된 일반,
전문 공종별로 새롭게 획득한 실적이므로
새법령시행이전과의실적과는 차이가있
다고보기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겸업한 전문업종으로 전환
된 공사 실적은 기존의 일반공사 실적에서
는삭감된다는것이다. 또한, 전환된실적은
합병, 건설업 양수도, 상속등의 경우 적용
되는실적합산에서제외되며합병, 양수도,
상속등에의해건설업자가된자가일반·

전문 간건설공사실적전환을신청할수도 없도록규정하였다.

일반업체의 실적 전환 가능성 낮을 듯

지난 4월 30일 「건설법」 개정으로 2008년 1월부터는(설비건설업의 경우 2012년부터) 일반·전문건설업간겸업제한이폐지되기 때문에 일반건설업자도 동일 법인 내에서 전문건설업 등록이 가능하고, 직접시공한부분에대해실적전환도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 개정에도불구하고 일반건설업자가 직접 시공한 일반공사 실적을 전문업종 공사 실적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일반건설업자는전문건설업종등록과전문공사실적이 없이도직접시공이가능하고, 특히내년부터의무하도급제폐지가시행되면전문업종 등록 없이도직접시공비율을얼마든지높일수있기때문이다. 만약, 특정공정에대해직접시공을원한다면 굳이해당전문업종에대한겸업대신해당공정에대해경험을 보유한 기술자만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것이다.

어느 경우에 실적 전환 시도할까

만약 일반건설업자가다른일반업자로부터 전문업종 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받고자 하면, 물론 전문업종에대한겸업이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러한 일반건설업자의하도급시장진출가능성이높지않은편이며, 비록향후하도급시장진출이활성화된다고해도전문업종등록은하되실적전환은그렇게많이일어나지 않을것으로보인다. 하도급시장에진출할가능성이있는업체는 주로 중소 일반건설업체인데, 이들업체의경우실적전환을할만큼기존일반공사실적에여유가있지않으며, 하도급시장에진출할경우전문업종 실적이그다지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일반업체가전문업종을등록하여다른일반업체

의하도급을받는 경우전문공사실적에의한 하도급 수행보다는 해당 일반업체와의 특정관계에의해 하도급공사를도급 받아수행할가능성이큰것이다.

다만향후겸업제한폐지와더불어주계약자형공동도급이활성화될경우에는일반업체의 실적 전환이 보다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이 활성화된 이후 기존의 일반업자 중 전문업종을 겸업해 전문공사 시공업체로 공동 수급자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 전문업종의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건설업체가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하여 전문공사 원도급 시장에 참여하려는경우도전문공사실적이필요하다. 전문건설협회가작년말발표한통계연보를 참조하면 2005년 수주금액 기준으로 전문업종 원도급 시장은 약 15,800억원이며, 이중 40% 정도가중소 일반건설업체가관심을가져볼만한공공공사물량이다.

전문업체의 실적 전환 요건

한편, 전문건설업체가 전문공사 실적을 일반공사실적으로전환하려면과거3년간 주요 전문 공종이 포함된 2억원 이상 복합공사의 신고 실적에 한해 일반공사 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주요 전문 공종은 토목·건축공사업실적으로전환할경우토목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의미하고, 조경공사업 실적으로 전환할 경우 조경 식재 및 조경 시설물 설치 공사를 의미한다. 즉, 해당주요전문공종의공사를단일사업에서 동시에 하도급 받아 시공했을 경우에만 시공실적전환이가능하다.

한편, 2억원 미만 공사는 제외되는데, 그 이유는 「건설법」상 2억원 미만 공사는 2개 공종 이상이 복합되었다 하더라도 복합 공사가 아닌 단일 전문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업체의 실적전환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앞서 언급한 기준

에 따라 실적전환이 가능한 실적을 매년 2억원 이상 보유한 전문업체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전문업체의 실적 전환은 실적전환에상한금액이 없는 일반업체와는 달리 60억원까지로 제한되는데, 60억원은 30억원 미만 공사적격심사에서만 점을 받을 수 있는 실적수준이다.

전문업체의 실적 전환 다소 까다로워

전문업체의 실적 전환을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토목공사업실적으로 전환 가능한 실적은 단일 토목공사에서 토목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동시에 하도급 받아 시공한 실적이나 이 실적 외에는 다른 전문공종까지 단일 토목공사에서 동시에 시공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게다가 이 실적이 매년 2억원 이상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지속적으로 있어야만 전환이 가능하다. 건축공사업으로의 실적 전환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조경공사업으로의 실적전환은 단일 조경공사에서 조경 식재와 조경 시설물 설치공사를 동시에 하도급 받아 시공한 실적이나 이 실적 외에는 다른 전문공종까지 단일 조경 공사에서 동시에 시공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이 실적이 매년 2억원 이상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간 지속적으로 있어야만 전환이 가능하다.

이처럼 전문건설업체의 실적 전환 조건을 다소 까다롭게 한 것은 실적 전환 금액 범위를 60억원까지 높여 3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에서 전환실적으로만 점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하되, 일정수준 이상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업체로 한정하고자 한 취지로 볼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전문업체는 토목공사 실적, 건축공사 실적, 조경공사 실적 중 한 가지 공사 실적에 대해서만 실적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전문공사실적을 토목공사실적으로 전환한 전문업체는 전환 가능한 실적이 더 있다 하더라도

도건축공사실적으로의전환은불가능하다.

파급 효과 예상보다 축소될 듯

겸업 제한 폐지 이후 일반업체보다는 전문업체가 상대적으로 겸업에 대한 기대가 더큰편이다. 겸업을통해원도급자의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중소 전문업체의 경우 일반업종으로 실적을 전환하기보다는 전문공사에 계속 집중함으로써기존에수행해오던공사에대한경쟁력을강화하는것이더바람직할것이다. 다만, 일반업종으로 실적을 전환하더라도 기존의전문업종을영위하는데큰지장이없는 대형 전문업체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실적전환을시도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이번개정안의내용을살펴볼때 3년동안지속적으로기준에적합한실적을 보유한 업체만이 실적 전환이 가능해 실제로실적전환이가능한업체는보다축소될 것이다. 또한, 전환가능한실적도토목, 건축, 조경공사업종중한업종에국한되고, 실적 전환한 대형 전문업체를 지역제한 공사가 발주되는 16개 광역 자치단체별로 분배하면실적전환으로인한입찰참가자수증가율은 우려할 정도로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보인다. 실적전환이적용되는30억원 미만 공사는 대부분 지역제한 입찰 공사이며, 이 경우 현재도 30개에서 많게는 800개업체까지입찰에참여하고있다.

기타 개정 내용

이번 「건설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에는 상호 실적 인정 기준 외에 건설 공사 부실 및 부조리에 대한 제재 강화, 건설 근로자와 하도급자 보호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다중이용토목 시설물에대한건설업 등록업체시공의무화, 콘크리트포장도로 하자 보수 책임 기간 연장(2년에서 3년), 5

인이상사망시 6개월 영업정지처분, 하도급사의시설손괴및사망사고유발영업정지처분시원도급사에대한과태료(15만원) 부과 조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건설업 등록및처분 권한을가진지자체가건설업체영업정지등의제재요구를제대로이행하지않은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처분 관청의 제재 이행 여부를 건교부가 감독하는 조항도삽입됐다.

그리고 건설 근로자와 하도급사 보호를 위해 건설 근로자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의무 대상 확대, 최저가낙찰대상공사에대한하도급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또한, 변동 가능성이 큰 조항으로 꼽혔던 토목건축공사업의시공능력순위및실적공시제가 폐지됐고, 700억원 이상 건설 공사에 대한 기술사배치의무조항도포함됐다.

상생의 지혜 모색해야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이번 「건설법」 하위법령개정안입법예고를통해건설업종간교차진출시상호실적인정방안이유효함을드러냈고, 하도급거래투명화및건설근로자 보호책, 부실·부조리건설사 제재 방안 등이 가닥을 잡았다. 특히, 그동안일반·전문건설업계간 입장 차이 속에 난항을거듭한전문업체의실적전환방안이 60억원까지 전환을 허용하되 대상 업체는 실적이 충분히 쌓인 업체로 제한해 나름대로합리적균형점을찾은것으로보인다.

2008년부터는 겸업 제한이 폐지되어 일반, 전문 건설업체가 하나의 건설업이라는 테두리안에들어가게되므로이제는더 이상대립이아닌상생의지혜를모색하는건

설산업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hilee@cerik.re.kr

인터넷 여행

<http://www.codil.or.kr>

건설교통전자정보관



이번 호에 소개하는 건설교통전자정보관은 국내 건설교통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국가 통합 정보망 및 국내외의 건설 교통 유관전자도서관과의 연계 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설교통 기술 연구 개발 활용에 기여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또한, 기술 개발 경쟁력의 강화와 건설산업 분야의 지식기반사회 구축 촉진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강화 및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필요한 정보에 접근 및 활용이 가능토록 하는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건설교통전자정보관의 주요 항목은 건설교통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 여러 건설 유관기관의 연구보고서 및 국내에서 수행 완료된 건설 분야의 연구 개발 정보, 최근의 기술 동향을 신속하게 수집, 제공하는 ‘연구정보와 건설 및 관련 업체, 건설 기술자들이 건설 현장이나 현업에서 자주 활용하는 기술 정보와 사례 정보,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품셈 등의 DB를 제공하는 ‘공사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교통 분야 학·협회, 민간기업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등을 웹진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월간지 원문을 제공하는 ‘정기간행물과 국내외 건설교통 기술 분야 전반에 대한 주요 세미나를 등록, 검색할 수 있다. 세미나 개최 정보에 대한 상세 내역도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로 하여금 건설교통 기술 분야 최신 동향 파악을 가능토록 하는 ‘학술행사정보’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대한 자료량과 함께 자료에 대한 통합 검색 기능을 제공하며, 좀 더 정확한 검색을 위해 메뉴별 검색 항목을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이 사이트의 특징이다. 

오광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oks@cerik.re.kr